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11
----------	-------

발의연월일 : 2019. 8. 26.

발의자 : 지상욱 · 최운열 · 유승민  
이동섭 · 장정숙 · 정태옥  
하태경 · 김삼화 · 오신환  
김성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의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별표 제24호 신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건축도시공간연구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국무총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권리·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토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속한 권리·의무는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속 직원은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